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4나2005958(본소), 2024나202649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4나2005958(본소), 2024나202649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5687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손서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김유범, 정범식

변론종결 2024. 7. 12.

판결선고 2024. 8.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56879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가.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나. 항소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다.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734,936,650원, 원고 B, C에게 각 489,957,7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135,741,864원, 원고 B, C은 각 90,494,5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61,591원, 원고 B, C에게 각 139,041,0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 B,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를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로 고쳐 쓴다.

○ 제11면 가장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역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도하여 매매계약의 열개를 잡고 망인이 귀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적이거나 추가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제1심법원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제2, 3, 4면).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는 망인의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제3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대응 역시, 망인의 거주지 및 영주권 등 문제로 피고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피고와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을 제31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열개를 잡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N’ 토지를 소유한 AB, AC는 2017. 11. 25. “L 산주(현 피고)는 N 산주(현 AB, AC)가 사용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37호증). 위 “L”은 이 사건 공장용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L’ 토지를 뜻한다. 피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AB, AC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인지 ‘망인’인지를 구분하여 기재된 것이 아니다. “L 산주(현 피고)” 부분 기재는 피고 측, 즉 피고와 망인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위 기재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망인, AD와 함께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을 제41 내지 45호증). 그러나 피고, 망인, AD은 함께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였고(갑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와 망인은 공동매도인 지위에 있었던 이상(갑 제5호증), 피고나 AD이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 요지

피고, 망인, A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사건 토지들 매각대금) 분배비율을 0.4085(피고), 0.4085(망인), 0.183(AD)으로 각 약정하였다[0.4085(피고) + 0.4085(망인) + 0.183(AD) = 1]. 피고, 망인, AD은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역시 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분배비율에 따라 정당한 몫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은 위 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와 망인에게 각

1,414,039,573원(= 3,461,541,184원 × 0.4085, 원 미만 버림), AD에게 633,462,036원(= 3,461,541,184원 × 0.183, 원 미만 버림)이 각 배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AD의 분배액 633,462,036원 전액을 피고 자신이 출급한 공탁금(이 사건 공탁금의 1/2 상당액)에서 A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와 망인은 분배비율이 같아 AD의 분배액도 피고와 망인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망인은 위 633,462,036원의 1/2에 해당하는 316,731,018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16,731,018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나누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 기초한 것으로, 위 문서에 따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1심에서부터 방어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갖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망인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분배금보다 초과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주요하게 심리되어 온 쟁점인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정당한 귀속액이 얼마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이 법원까지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들이 갖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적법하다.

4) 소결론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반소 청구 본안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은 ‘피고, 망인, A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분배비율을 0.4085(피고), 0.4085(망인), 0.183(AD)으로 각 약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쟁점 약정’이라 한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을 이 사건 쟁점 약정의 핵심적인 증거로 든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증명하는 힘이 크지 않다.

가)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피고의 자필로 이 사건 쟁점 약정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망인이나 AD의 서명날인 등 망인이나 AD이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 피고, 망인, AD이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분배비율을 합의하였다면, 망인이나 AD이 위 합의 내용을 기재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야 비로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쟁점 약정은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분배 비율에 관한 중요한 약정이므로,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초기에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어야 자연스럽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이 지연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의 분배 비율은 ‘투자 금액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투자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 망인, AD이 레미콘 사업을 위하여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는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문서 제1면 가운데에는 “2000년 1월 이사 3인 결정(AD 자금 투입일)”이라, 제1면 꼬트머리에는 “2000년 1월

3.人 합의 결정사항임”이라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위 문서는 “매매계약일 현재”인 2008. 3.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자금투입 기간으로 분배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분배비율을 2000. 1.에 정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2000. 1.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8. 3.에 체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 문서는 1차 계약금을 5억 원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금액과 같은데(갑 제5, 22호증), 이를 보면 위 문서에서 정한 분배비율과 분배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08. 2.) 이후에 정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위 문서 제1면 꼬트머리에 있는 “2000년 1월 3.人 합의 결정사항임”이라는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마)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AD 작성 사실확인서를 을 제30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① 피고로부터 2021. 12. 28. 707,550,000원을 지급받은 AD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위한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② 그 확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망인과 피고가 1996년경 토지 매입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였다’는 부분, ‘피고의 요청에 따라 AD이 H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부분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③ AD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 AD이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

2)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G으로부터 2008. 2. 9. 계약금 5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날 191,500,000원 및 204,25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또한 같은 계좌에 G으로부터 2008. 3. 12. 3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그다음 날 177,450,000원이 출금되었다(을 제20호증). 위 191,500,000원은 5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AD 분배비율 0.183을 곱한 91,500,000원($= 5\text{억 원} \times 0.183$)에 1억 원을 더한 돈이고, 위 204,250,000원은 5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망인 분배비율 0.4085를 곱하여 계산한 204,250,0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위 177,450,000원은 3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AD과 망인 분배비율을 합산한 0.5915($= 0.183 + 0.4085$)를 곱하여 계산한 177,450,0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계산상 명백한 사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는 피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일부를 망인과 AD에게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망인, AD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즉, ‘피고는 2008. 2.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의 대금 분배를 주장하면서 그 분배비율을 전제로 피고 자신이 수령한 8억 원을 망인과 AD에게 배분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가 제기된 2014. 4. 이전까지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5,111,005,970원을 수령하였는데(갑 제6호증 제15면, 갑 제7호증 제14면), 위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11,005,97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쟁점 약정에서 정한 대로 분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1,502,340,851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쟁점 약정에서 정한 대로 분배비율로 피고와 AD에게 돈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쟁점 약정상 분배비율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1. 11. 5.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 중 1,714,582,058원을 출금하고 2021. 12. 28. AD에게 707,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갑 제15호증, 을 제26호증),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에 AD의 분배비율 0.183을 곱하여 계산하면 633,462,036원임에도 이를 74,087,964원(= 707,550,000원 - 633,462,036원) 초과하는 707,550,000원을 AD에게 지급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21. 11. 5.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 중 절반가량인 1,714,582,058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약정에 따른다면 피고는 AD에 대한 분배액 633,462,036원 중 절반만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① 피고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역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마)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열개를 잡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N’ 토지를 소유한 AB, AC는 2017. 11. 25. “L 산주(현 피고)는 N 산주(현 AB, AC)가 사용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37호증). 피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바)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사정으로도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망인, AD와 함께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을 제41 내지 45호증).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사정으로도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한 소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